

事例중심으로 본 환경보전법규 질의·응답 해설

- ◆...최근 환경청 정혁진 법무담당관의 발간한「사...」◆
 - ◆...례중심으로 본 환경보전법규 질의·응답해설」중...」◆
 - ◆...에서 질의·응답해설부분을 발췌해 게재한다. ...」◆
- (편집자 註)

3. 변경허가대상여부 판정시 증설비율 결정 기준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근거
 질의 : 서울 계획 31602-1554 ('87. 8.25)
 회신 : 대관 31720-10158 ('87.10.23)
2. 질의내용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시설 중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중 제4항의 열공급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미 허가된 시설보다 10% 이상의 증설과, 폐수 배출시설의 20% 증설이라함은 전체시설의 비율을 말하는지, 단위시설의 비율을 말하는지?
3. 회신내용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 중 열공급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미 허가된 시설보다 10% 이상 증설이라 함은 각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한 비율이며,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단위방지시설별로 이에 속하는 배출시설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말한다.

4. 이 유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열공급시설 외의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 배출시설은 각 배출시설별로,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단위 방지시설별로 허가하기 때문이다.

5. 참조조문

환경보전법 제 15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7 조 및 제 18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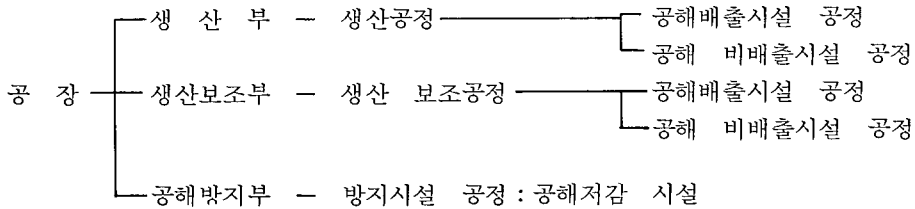
해 설

1. 변경허가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 가. 가스 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설치중
 - 열공급시설 : 4 종이상 전부 포함
 - 열공급시설 이외의 시설 : 배출 가스량이 5천㎥/hr 이상 또는 이미 허가된 시설보다 10% 이상 증설의 경우만 해당
 - 나. 폐수배출시설
 - 이미 허가된 시설보다 20%이상 증설의 경우
 - 이미 허가된 시설의 별도 공정의 신설 등
2. 전체시설에 대한 비율여부 검토

○ 전체시설이라 함은 공장의 생산공정 또는 보조공정중 공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들

전체를 의미한다.

○ 공장을 구성하는 시설을 세분하면



이중 공해배출시설 공정만이 법상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며, 동 배출시설은 하나의 사업장(공장)안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포함될 수도 있다.

○ 그러므로 전체시설에 대한 비율로 했을 경우는 여러개의 배출시설을 신규로 증설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단위배출시설에 대한 비율여부 검토

○ 증설규모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단위배출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 * 단위배출시설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어떤 오염물질을 생산·배출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하나의 단위생산공정 속에도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4. 단위방지시설을 기준으로 한 개념

○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유형

- 하나의 배출시설에 하나의 방지시설 설치
- 복수의 배출시설에 하나의 방지시설 설치
- 복수의 배출시설에 복수의 방지시설 설치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배출시설의 규모가 증가하면 방지시설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 현실적으로 하나의 방지시설로 몇 개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는 몇 개의 배출시설을 한 단위로 묶어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5. 결 론

○ 본건 증설비율 결정기준은 단위방지시설을 기준으로 한 개념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 일반적으로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

시설은 하나의 배출시설에 하나의 방지시설이 설치되는것이 보통이며,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는 몇 개의 배출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에 연결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4. 기존시설의 100% 대체시 변경허가 대상 해당 여부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서울 계획 31602-1554('87. 8.25)
회신 : 대관 31720-10158('87.10.23)

2. 질의 내용

기존의 배출시설(방지시설 포함)을 같은 규모의 신규시설로 대체시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3. 회신 내용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포함한 단위공정 전체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다.

4. 이 유

이미 허가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전체를 대체한다 함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며, 이미 허가된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17조 및 제 18조

해설

1. 증설규모에 따른 변경허가대상 기준의 대표적 사례

가. 가스상 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 열공급시설 외의 시설로서 이미 허가받은 시설의 10% 이상 대체·증설시

나. 폐수 배출시설 : 허가받은 시설의 20% 이상 대체 증설시

2. 기존 배출시설의 100% 대체시

○ 이론상으로 보면 10% 또는 20% 이상의 대체라고 할 경우 100%의 대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이미 허가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공정 전체를 대체한다 함은 이미 허가된 시설을 폐쇄하고 새로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률적 성격이 대물허가임에 비추어 이미 허가시설이 존재치 아니하게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변경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 신규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 그러나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는 실제의 허가절차나 심사과정 및 그 효과면에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함에 따른 큰 실익은 없다 할 것이다.

5.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증설시 변경 허가 대상 해당 내역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신 근거

질의 : 서울 계획 31602-1554('87. 8.25)

회신 : 대관 31720-10158('87.10.23)

2. 질의 내용

가스·입자상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중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시설 1내지 8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허가받아 이미 운영하는 사업자가 활성탄 제조시설, 가축·야고 및

젤라틴 제조시설, 요업제품시설 및 단백질 제조시설 등 변경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시설을 기존사업장 내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

3. 회신 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다.

4. 이유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배출시설에 대한 대물적 허가이므로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다른 새로운 별개공정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이 아니라, 신규 배출시설의 설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제 15 조, 동법 시행규칙 제 17 조 및 제 18 조

해설

1. 설치허가와 변경허가

가. 동일점

- 양자 모두 대물적허가 : 사업장별이 아닌 배출시설 단위로 허가.
- 허가신청 및 허가절차 동일 : 실제에 있어서 양자간에 거의 차이가 없음.
- 동일한 법적효과 발생 :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양자 공히 무허가 배출시설이 됨.

나. 차이점

- 허가신청면에서 : 설치허가는 공장설립시, 변경허가는 시설의 개선·대체 등 당초 허가 받은 사항의 부분적 변경사유 발생시
- 허가심사 면에서 : 설치허가는 최초의 허가이나 변경허가는 갱신과 유사하다. 환경보전법상 허가유효기간이나 경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가. 동일점

- 배출시설의 대체·개선시 신청
- 대물적 심사대상

나. 차이점

- 위반시 법상 제재면에서 :
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어 공장폐쇄 등 제재조치가 강력하나 변경신고 미필시는 과태료등 단순한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될 뿐이다.
- 중요도면에서 :
변경허가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배출시설의 변경이나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및 대체·변경의 정도가 큰 경우인데 반해 변경신고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시설로서 그 대체·변경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와 배출시설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결 론

규칙 제 17 조(별표 7)에서 정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 이외의 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변경이 아니라 별개 공정을 가진 새로운 배출시설이,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내에 신규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는 이 경우 변경허가가 아니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이다.

6. 이미 허가받은 시설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경 허가 대상 해당 여부

사례내역

1. 질의 및 회의 근거

질의 : 광주 계획 31720-1882('87.12.31)
회신 : 대관 31720-303('88. 1.13)

2. 질의 내용

이미 허가받은 시설 중 일부를 시설의 변경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 대상인지의 여부?

3. 회시 내용

변경신고 대상이다.

4. 이 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정상가동중인 배출시설의 일부를 허가받은 시설의 변경 또는 소재지변경 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허가증상의 배출시설을 분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고로 처리하여야 함

5. 참조 조문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7 조 및 제 18 조

해 설

1. 현행법상의 규정 (법 제 15 조 제 2 항)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사항 중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규칙 제 17 조)

-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
-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 :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 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규칙 제 17 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만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허가받은 사항은 범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음과 같은 양설이 존재한다.

- (1) “갑”설 : 배출시설은 대물허가이므로 허가받은 사항이라 함은 배출시설에 한한다.
- (2) “을”설 : 배출시설의 허가는 대물허가이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만이 허가대상이나, 허가받은 사항에는 이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등도 포함된다고 광의로 해석해야 한다.